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	http//www.mke.go.kr

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 박병찬 팀장(2110-5326), 김도헌 사무관(2110-5327)

지경부, 국내대학에 기술관리 주의 당부

- 6.24일 COEX, 국내대학 대상 「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」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는 **'11.6.24(금) 14시 서울 COEX**에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**「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」를 개최**하고,

* **전략기술** : 대량파괴무기(WMD ; Weapons of Mass Destruction)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 가능한 기술로서 국제협의체에서 지정하고 있음

○ 대학의 **안전한 기술이전(기술수출) 지원**을 위해, 국제무역질서로 부상한 **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와 함께 전략기술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을 소개**함.

□ 최근 **국제공동연구와 외국인 접촉 등**으로 **대학의 기술이전 형태가 다양화**되고, 국제적 수출통제 대상인 **전략기술의 대외유출 위험성이 증가**함에 따라,

○ 국제사회는 WMD로 활용 가능한 **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강화**하고 학계 및 연구계의 **인식 개선을 촉구**하고 있으며,

* (기술의 무형이전) 전자적 이전(이메일, 전화, 팩스 등)과 사람을 매개로한 기술지원 행위 일체(강의, 세미나, 노하우 전수 등)를 통칭

* (해외처벌사례)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대학원생을 연구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여 수차례 전략기술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全 테네시 대학교수가 당국으로부터 징역 48개월을 선고받는 등 대학 내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전 행위조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

○ **우리나라도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통해 전략기술 이전을 통제**하고 있으나,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**인식도는 낮은 상황**임.

□ 이번 설명회에서 지식경제부는 국내 대학이 보유한 **전략기술이 연구자 부주의 등**으로 국가안보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**우려집단에 불법 이전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**받을 뿐만 아니라,

* 최근 국내에서는 인터넷에 사제폭탄 제조기법이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

○ **국제적 신뢰도 하락 및 거래부적격자 등재**로 연구 활동 자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,

* 국제사회는 WMD 확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개인을 거래부적격자 및 제재대상자로 지정(대학 260여개, 연구기관 500여개)

○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내 **연구자의 인식제고와 전략기술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**함.

□ 아울러, **지식경제부 이운호 무역정책관**은 환영인사를 통해 국내 대학의 기술관리 체제가 미흡할 경우 선진 연구기관이 첨단 전략기술 이전 협력을 꺼릴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고,

○ 기술무역 강국 도약을 위해 **연구기관 스스로도 엄격한 기술이전 관리체제를 갖추고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주문**하는 한편,

○ 대학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전략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·추진할 계획임을 밝힘.

<참고> 1.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 개요
2.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
3. 우리나라 제도 및 국내·외 사례
4. 전략기술 불법이전한 前 대학교수에 유죄판결 사례

붙임1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 개요

□ **추진배경**

○ '10년 국내대학 대상으로 전략기술 보유현황 조사 결과, **국내 62개 대학이 전략기술을 보유**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으나,

○ 전략기술 관리제도에 대한 **인지도가 낮고** 외국인과 공동연구 등 불법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**전략기술 수출통제 인식제고 필요**

□ **일시·장소** : '11.6.24(금) 14:00~17:00 / 코엑스 컨퍼런스 룸 402호

□ **주요내용** : **전략물자관리제도, 기술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**

□ **세부 프로그램**

시 간	내 용	비고
13:30~14:00	■ **등록**	–
14:00~14:10	■ **국제무역질서 전략물자 수출통제**	영상물
14:10~14:15	■ **환영사**	무역정책관
14:15~14:45	■ **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** • 수출통제 개관 및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 • 전략기술 수출통제 중장기 발전전략 소개	지식경제부
14:45~15:25	■ **전략물자 주요 품목소개** • 각 분야별 주요 전략물자 통제품목 안내	전략물자관리원
15:25~15:50	**휴 식**	–
15:50~16:40	■ **기술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** • 전략기술의 범위, 기술제공의 형태 및 사례 • 수출관리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 • 관리체제정비, 인력관리 등 기술관리방안 소개	전략물자관리원
16:40~17:00	■ **질의응답**	–

붙임2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

□ **전략물자 수출통제 배경**

○ 9.11테러 이후 **대량파괴무기(WMD) 확산방지가 국제안보의 핵심 아젠다**로 등장했으며, 전략물자 **수출통제가 주요 수단**으로 부상

* **전략물자**란 대량파괴무기(WMD ; Weapons of Mass Destruction) 및 이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·기술·S/W

- 수출통제 위반기업은 **거래부적격자(Denial List)에 등재**되어 **무역거래 제한, 대외이미지 실추** 등 기업경쟁력 및 국가이미지 저하 우려

□ **국제 수출통제 체제**

○ 脫냉전 이후 미국 등 서방선진국을 중심으로 **다자간수출통제체제(4개)를 설립**하여 전략물자의 **우려국가 및 테러집단 유입을 통제**

《국제 수출통제 체제》

통제체제	통제대상물자 및 기술	품목수	회원국	발족(가입)
핵공급국그룹 (NSG)[1]	핵무기 (원자력전용, 이중용도품목·기술)	241개 (원자력전용:131개)	46개국	'78('95)년
호주그룹 (AG)[2]	생화학무기 (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기술)	212개	41개국	'85('96)년
미사일기술통제체제 (MTCR)[3]	미사일 및 운반체 (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·기술)	183개	34개국	'87('01)년
바세나르체제 (WA)[4]	재래식 무기 (이중용도품목·기술)	762개 (군용:277개)	40개국	'96('96)년
계		1398개 / HS (10단위) : 1,964개		

□ **국제규범화 동향**

○ UN안보리결의(1540호, '04.4)를 통해 **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규범화** 및 UN 회원국들의 **제도이행·처벌 의무화**

○ 미국 등 선진국은 수출통제 국제규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

1) 핵공급국그룹(NSG : Nuclear Suppliers Group) :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
2) 호주그룹(AG : Australia Group) :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
3)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 :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) : 미사일 관련 통제
4) 바세나르체제(WA : Wassenaar Arrangement) : 재래식 무기·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

붙임3 우리나라 제도 및 국내·외 사례

□ 개 요

○ **'87년**, 대외무역법시행령에 **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**하고, 바세나르체제(WA) 등 **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**

* 4대 국제체제 가입년도 : NSG('95), AG('96), WA('96), MTCR('01)

○ **'05.2월**, **전략물자관리시스템(Yestrade)을 개통**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, 수출허가 등 **수출통제 업무 온라인 서비스** 제공

○ **'07.6월**,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 전문기관인 **『전략물자관리원』을 설립**하여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

* 전략물자 판정, 시스템 운영, 교육·홍보 및 국제협력 등 지원

□ 주요내용

○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통제대상 물품 등을 **지식경제부에서 전략물자로 지정·고시**

○ **전략물자관리원 의뢰(사전판정)** 또는 기업자체 판단(자가판정)을 통해 **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** 후 **관계행정기관의 허가**를 거쳐 수출

- **전략물자가 아닌 물자**도 WMD 제조 등에 사용 우려시 허가**(상황허가)**

○ 전략물자의 원활한 수출통제를 위해 **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**하여 포괄수출허가 등 인센티브 부여

- 수출허가 등 관련규정 위반시 **7년이하 징역** 또는 **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** 부과 및 **3년 이내 무역제한** 조치

□ 국내 인식 및 해외 사례

○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**법·제도적인 측면을 정비**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운용중

* 美, 日 등 주요국은 기술이전 행위에 관한 포괄적 법제를 완비하고 있으며, 특히, 美·英은 민감 분야에 참여하는 외국인 입국 시 비사심사 제도를 운용중

○ 연구·개발기술은 **전략기술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, 이전행위도 다양**하여 불법이전 가능성이 농후하나, **인식도는 매우 낮은 수준**

* 전략기술의 불법적 이전에 대한 사전차단은 물론, 우리 고유기술 보호차원에서도 대학內 전략기술에 대한 인식도 제고차원의 대책마련 필요

붙임4 전략기술 불법 이전한 前 대학교수에 유죄판결 사례

□ 불법수출 관련자

○ 前 테네시 대학 교수 John Reece Roth

* Roth는 '09년 7월 1일, 미국 테네시州 Konxville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8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, 지난 '10년 고등법원에 항소함

□ 불법수출 혐의내용 및 관련 기술

○ **(이전기술)** Roth는 美 공군과 맺은 R&D 계약과 관련한 기술 정보를 불법 수출하여 무기수출통제법(AECA: Arms Export Control Act)을 위반

* AECA는 방산 물자 및 기술을 외국이나 외국 국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함

- Roth는 이전된 기술이 Munition List에 등재된 플라즈마 작동기 생산 前 단계로 통제대상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

* 플라즈마 작동기(Plasma actuator)는 공기역학적 흐름제어를 위한 장치로 제트 엔진 등의 소음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며, Roth는 동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임

- 연방규정상 수출통제는 군용품목의 최종 생산단계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기술 이전에 적용

○ **(기술이전 방법)** '05년 유학중인 대학원생 Xin Dai를 연구보조로 채용하는 한편, '06년 강의를 위해 중국 방문시 기술자료를 유출

○ **(의도성여부)** Roth는 의도(Willfulness)를 갖고 기술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,

- 법원은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로 기술을 이전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시

※ 출처 : Export Practitioner ('11.1)